

(앞쪽)

토지 출입증	
소속: 직급: 성명: 생년월일:	사진 (2cm×3cm)
위 사람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제6항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기 관 장 명 의 직인	

92mm×85mm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출입 목적	
출입 대상 시설·사업장 등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
	년 월 일까지
비고 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